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제재 완화 등〉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1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부금품 모집 등록·사용 규제 완화	2
2. 법 위반시 제재 처분 완화	8
3. 부칙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4.
3. 회 부 일 : 2026.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Ⅲ. 검토의견

1. 기부금품 모집등록·사용 규제 완화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변경하는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모집비용”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3천만원----- -----금액(이하 “등록대상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 ----- ----- ----- ----- ----- ----- -----.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u>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u> 충당할 수 있다.	----- -----<u>모집비용에</u>-----.
---	--

현행법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기부금품은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되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 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 등록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제1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기부금품 모집 활동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변경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품의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부금품 모집과 목표금액 초과시 사후등록제를 도입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사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기부금품 관련 법규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명이 「기부통제법」(1949~1951)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1996),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6~200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6~20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4~)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2006년 기부금품 모집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부금품 모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전용계좌 제출 및 영수증 교부 의무 등을 도입하여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전반적인 입법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기부활동은 자발적인 사회적 연대에 기반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할·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²⁾

개정안은 사후등록을 허용하고 기부금품 사용기간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연장·확대하여 기부금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부금품 규제 비교>

구분	현 행	개 정 안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사전등록	사후등록 허용 (14일 이내)
사용기간	2년+2년	3년+3년
모집비용 충당비율	(상한) 100분의 15	(상한) 100분의 30

다만, 2006년 기부금품 모집 사전허가제 폐지 당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모집단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20%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모집비용 충당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을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일부 모집단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³⁾

2) 이송림·한경석,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12.31.

3) 제17대 국회 제256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7.)

기부금 사용과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고 위반시 제재 할 수 있도록 하거나⁴⁾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하향⁵⁾하려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집비용 충당비율 상향의 필요성과 부정적 우려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모집등록 기준금액 상향은 모집자의 편의, 기부 투명성 제고, 기부자 재산 보호 등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기부금품 사용기간 연장은 사업 성격상 장기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모집등록 목표액 초과시 사후변경은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및 보완 요구·조치 방안을 도입하는 등 수정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미등록 모집에 대한 사후등록은 현행 모집 등록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4) 제21대 국회, 정운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223호)

5) 제18대 국회, 최병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05395호)

6)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정하고 있음.

2. 법 위반시 제재처분 완화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장부 기입, 장부·서류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의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고,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 법령 위반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이나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 ----- <u>1년</u> ----- ----- <u>1천만원</u>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u>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u>	1. <u>속임수나</u> -----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이나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삭제></u>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18조(과태료) <신 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② ----- -----300만원-----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 ----- -----.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시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⁷⁾

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공무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적은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⁸⁾

개정안은 기부금품 사전신고 의무 위반과 국가 및 지방자치등의 기부금품 모집금지 의무 위반, 장부 거짓 작성, 장부 및 서류 구비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을 기존 **벌칙**규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고,

모집종사자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기부금품 모집을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 등록청의 제출명령이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감경하여 과도한 형벌규정과 과태료로 인한 기부금품 모집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8)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법 위반시 제재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모집등록	미등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등록		현행과 같음
기부금품 출연 강요			
등록 말소	금품 미반환		
	미승인 처분		
사용	용도 외 사용		
모집비용 총당비율 초과			
금품 사용 결과 미공개			
보고서 미제출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부 거짓 기입			
장부·서류 미구비			
모집종사자 미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공개장소 기부금품 접수			
제출명령 및 검사 거부·기피·방해			

특히 최근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기 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나 민생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아,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 전환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⁹⁾

9) 관계부처 합동,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2025.12.30.

다만, 개정안 제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제1항¹⁰⁾은 국가 등에 의하여 기부가 강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아닌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¹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은 기부금품 사후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사후등록 위반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사후등록 도입시 사후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후등록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¹²⁾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2)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사후등록 의무 위반과 미등록 모집에 대하여 동일한 처벌으로 하게 되는 경우, 사전등록의 준수 유인이 저하되거나 사후 등록이 사실상 사전등록을 대체할 우려가 있어 처벌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혼선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전환 대상과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벌칙 체계 개선을 위한 시정명령 도입 등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 의 처
02) 6788-5350